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42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김기웅

권성동 • 김정재 • 구자근

윤재옥 • 이상휘 • 김미애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축용, 조경용 등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나, 골재채취법의 골재채취업에 등록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하여 쇄골재용이 아닌 건축용, 조경용 등 다른 용도의 석재채취업까지 등록한 것으로 법령상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음.

또한, 현행 석재채취업 등의 폐업 신고 규정이 없어 폐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등 적절한 관리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재의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거나, 계승·발전시킬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는 '전통 석재제품을 인증'하고 있으나,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 석재제품 인증'제도는 복잡한 인증 조건으로 인증방법의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골재채취법상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쇄골재용도의 석재채취업 등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폐업 신고에 따른 등록 말소 근거를 마련하여 석재채취업 등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 존중 및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부담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선정'제도로 조건을 완화하여 석재관련 사업자, 전통 석재제품 생산자 등의 참여유도 및 관심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현재 석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자들은 석재 용도 구분에 따라 등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문구상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석재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히 함(안 제9조제1항).
- 나.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폐업신고에 의해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사항 및 폐업신고 전 기존 행정처분에 따른 승계 및 재 등록까지의 기한을 규정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신설).
- 다. 석재산업 '우수사업자 인증', '전통석재 제품 인증'제도의 기존 복잡한 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선정' 제도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6조, 제28조).
- 라.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해당 업체 등의 반론권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문절

차 마련(안 제23조의2)

법률 제 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을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제1호의 석재 중 쇄골 재용 석재에 한하여"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폐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석 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이라 한다)에 게 승계된다.

- 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을 "(우수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를 "선정된 우수사업자"로,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서"를 "선정서"로,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사업자"로, "인증기준"을 "선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사업자에 대하여"를 "우수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선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를 "(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증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선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고, 같은 장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의 제목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이나"를 "선정이나"로,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인정을"을 "선정·인정을"로, "인증·인정 표시"를 "선정·인정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증의"를 "선정의"로, "인증을"을 "선정을"로,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3호 중 "인증·인정기준"을 "선정·인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인정기준"을 "선정·인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인정이"를 "선정·인정이"로, "인증·인정을"을 "선정·인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인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취소
-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선정 취소
- 3.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 · 인정의 취소
-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취소

제26조제3호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증표시"를 "우수사업자 표시"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인증·인정"을 "선정·인정"으로, "인증·인정 표시"를 "선정·인정 표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등)	제9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 등)
① 석재산업 중 석재의 채취를	①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	
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u>.</u>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	는 제2조제1호의 석재 중 쇄골
다.	재용 석재에 한하여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은 제9조제1항 본문	<u><삭 제></u>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③</u> (현행 제4항과 같음)
<u><신 설></u>	제11조의2(석재채취업등의 폐업)
	① 석재채취업자등이 그 업을

페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해당 석 재채취업등의 등록을 말소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 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다시 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1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 시 등록한 석재채취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석재채취업 자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등은 재등록 석재채취업 자등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1조에 따 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석재채취업자등으로 등록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

- 제14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산림 저 청장은 석재의 채취·가공기술 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 업자로 <u>인증</u>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석재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선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석재채취업자
등으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
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14조(우수사업자 선정) ①
<u>선정</u>
②
<u>선정</u>
·.
③ <u>선</u>
정된 우수사업자
<u>"우수사업자"</u>
<u>선정</u>
<u>서 우수사</u>
업자 표시
④ <u>우수사업자</u>
<u>우수사업자 표시</u>

-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⑤ 제1항에 따른 선정의 유효기증을 신청하는 석재사업자에게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로 하고, 선정의 유효기간은 대바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비용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연장할 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u>인증사업자</u>가 제 8항에 따른 <u>인증기준</u>을 적합하 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은 <u>인증사업자에 대</u> <u>하여</u> 우선적으로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우수사업자 <u>인증</u>의 기 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u>을 취 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u> </u>
간은 선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
로 하고, 선정의 유효기간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⑥ <u>우</u> 수사업자
<u>선정기준</u>
<u> </u>
⑦ <u>우수사업자에게</u>
⑧ <u>선정</u>
제15조(우수사업자 선정의 취소)
<u>①</u> <u>우수사업자</u>
선정을
선정
•
1
1 <u>선정</u>

- 2. (생략)
- 3. 제14조제8항에 따른 <u>인증</u>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신 설>

- 제16조(전통 석재제품 <u>인증</u>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이 <u>인증이나</u> 전통 석재제품명인의 인정(이하 "인증·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u>인증·인정을</u>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u>인</u> <u>증·인정 표시</u> 또는 이와 유사 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u>인증·인정</u>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u>인증의</u> 유효기 간은 <u>인증을</u>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 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

2. (U 0) E E /
3 <u>선정</u>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지 아니하면 그 선정을 신청할
<u>수 없다.</u>
제16조(전통 석재제품 <u>선정</u> 등)
①
선정이나
 "선정·인정"
② <u>선정·인정을</u>
<u>선</u>
<u>정·인정 표시</u>
,
③ <u>선정·인정</u>
,
④ <u>선정의</u>
<u>선정을</u>

9 (청해과 간으)

- 되, <u>인증·인정</u>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⑤ 산림청장은 <u>인증ㆍ인정</u>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u>인증ㆍ인정</u>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인증ㆍ인</u>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인증·인정</u>을 받은 경 우
- 2. (생략)
- 3. <u>인증·인정기준</u>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u>인증·인정이</u>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u>인증·</u> <u>인정을</u>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u>선정·인정</u>
⑤ <u>선정 · 인정</u>
<u>선정·인정</u> -
<u>선정·인정</u>
1
<u>선정·인정</u>
2. (현행과 같음)
3. <u>선정·인정기준</u>
⑥ <u>선정·인정이</u>
<u>선정·</u>
인정을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
정·인정된 전통 석재제품을 우
선적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이 전통 석재제품을 구매할

① 인증·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2. (생략)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01 120111120220
석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u>⑧</u> 선정·인정
제23조의2(청문) 산림청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u>야 한다.</u>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재채
취업 등의 등록 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
업자의 선정 취소
3. 제16조제5항에 따른 선정·
인정의 취소
4. 제1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
업진흥지구의 지정 취소
제26조(벌칙)
1. · 2. (현행과 같음)
3
<u>선정</u>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되 정통

4.	제14조	스제4형	을 !	위반하여	<u>인</u>
-	증표시	또는	이외	- 유사한	丑
į	시를 힌	: 자			

5. (생략)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생략)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인정을 받은 자
- 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u> <u>증·인정</u>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u>인증·인정</u> <u>표시</u>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4. (생략)
- ② (생략)

4	<u> </u>
<u>수사업자 표시</u>	
5.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2	
<u>선정·인정-</u>	
3	<u>선</u>
<u>정・인정</u>	
	- <u>선정·인정</u>
표시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